

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(1/3)

• 모든 구비서류(제출서류)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[2026.05.13(수)]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	●		신분증 (※ 모바일 신분증 불가)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※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
	●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• 발급기준 : 본인 발급용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※ 온라인 발급의 경우 [발급용도(직접작성) :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/ 제출처 : DL이앤씨(주)]
	●		인감도장		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※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대조 확인
	●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●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(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●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	•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로 '상세'로 발급 ※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·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확인
	●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'상세'로 발급 ※ 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 내용
	●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• 국내 거주기간 확인 (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& 연간 183일 초과한 해외체류기간) ※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"Y" 설정하여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	●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※ 조회조건에 "전체" 설정,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하여 발급
	●		소득증빙서류	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
●		복무확인서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※ 수도권외 타지역 거주자 기타지역으로 청약시(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)	
해당자	●		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	배우자	•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 ※ 청약신청 전 외국인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함. (주택확인 불가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)
	●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●		자격요건 확인서	본인	•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
	●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배우자	•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※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 포함"하여 발급
●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배우자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(1년이상 동일 등본 등재시) •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 한함) ※ 성명,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로 '상세'로 발급	
●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직계존속	•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할 경우 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※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 포함"하여 발급	

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(2/3)

해당자	●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직계비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생아(2세미만, 2세가 되는 날을 포함) 우선/일반 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●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18세 미혼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"상세"로 발급
해당자	●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제출 (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) ※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. ※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만 인정(담당의사, 연락처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, 의료기관 직인날인)
	●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
	●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"전부"로 발급
해당자	●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(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)
	●	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공급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※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 (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),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※ "부동산 소유 현황"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'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' 추가
	●	자산입증서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"부동산 소유 현황"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※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(영유아, 미성년자, 군인, 노인, 장애인 등)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※ 자산입증서류 및 발급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 자산입증서류[표2] 참조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	●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입증 서류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-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→ 파견 및 출장명령서(직인날인), 재직증명서 -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- 근로자가 아닌 경우 →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(①, ② 모두 반드시 제출) ※ 유학, 연수(근로 및 파견목적 제외)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
	●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'전체포함'으로 발급
	●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※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"Y" 설정하여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제3자 대리인 신청시	●	위임장	본인 (청약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위임장(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)
	●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발급기준 : 본인 발급용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※ 온라인 발급의 경우 [발급용도(직접작성) :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위임용 / 제출처 : DL이앤씨㈜]
	●	대리인 신분증 (※ 모바일 신분증 불가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※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※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	●	부적격 소명 자료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,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• "소형-저가주택 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•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"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임이 명시된 공적 서류 • 기타 부적격 소명 서류

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(3/3)

소득 확인 시점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)	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	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
2026.05.13.	(해당 세대의) 전년도 소득	(해당 세대의) 전전년도 소득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증빙서류[표1] [* 모든 소득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행한 원본으로 직인날인된 서류만 인정함]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 자료	발급처
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: 출산휴가,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※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: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)으로 발급 ※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※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(직인날인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/ 세무서
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/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	①, ② 해당 직장
전년도 전직자 (연말정산 이후인 경우)	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"주(현)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	①, ② 해당 직장
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	① 소득금액증명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② 재직증명서 ※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①, ② 해당 직장
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, 면세사업자	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	①, ② 세무서
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	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명 ③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- 국민연금 미가입자: 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) (신고서상 금액(매출액-매입액)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)	①, ③ 국민연금관리공단 / 세무서 ② 세무서
법인대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※ 계속적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①과 ②를 모두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	①, ②, 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(해촉)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※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간 추정을 위하여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를 필수로 제출.	①, ② 해당직장 / 세무서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* 행정복지센터
일용직 근로자	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,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 위촉(해촉)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※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(해촉)증명서를 필수로 제출.	① 해당직장/세무서 ② 해당직장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2025.01.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) ② 전전년도 사실증명서(신고사실 없음을 입증함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 주택전시관에 비치 ② 세무서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 자산입증 제출서류[표2]

구분	자산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	① 부동산소유현황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(토지)등기사항전부증명서(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)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단위 주택·건물·토지 대상) ④ 공동(개별)주택가격 확인서 [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] ※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"일사편리(kras.go.kr)"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,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[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] ※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※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"일사편리(kras.go.kr)"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,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⑥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[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] (서울시: ETAX 이용안내 > 조회/발급 >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 (서울시 외: 위택스 > 지방세정보 >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 ※ 이택스,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"재산세 과세내역"을 발급받아 건물시가를 확인가능	①,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 ③ 위택스(www.wetax.go.kr) ④, ⑤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, 일사편리(kras.go.kr) ⑥ 서울시 이택스 (etax.seoul.go.kr), 서울시 외 위택스 (www.wetax.go.kr)
추가 (해당자)	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	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(www.eum.go.kr)
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	① 부동산소유현황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※ 발급방법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단위, 주택·건물·토지 대상) ※ 발급방법: 위택스 > 발급 >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> 미과세증명서(전국단위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 ② 위택스(www.wetax.go.kr) / 행정복지센터